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1494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536,306원 및 그 중 52,917,608원에 대하여는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273,486원에 대하여는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9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3,4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61113호로 양수금(채권양도일 2018. 4. 24.)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8.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5,227,290원 및 그 중 13,441,734원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8. 8. 28. 확정되었다. 2020.

7. 22. 기준 위 양수금채권의 잔액은 23,118,214원(= 원금 13,441,734원 + 이자 9,676,480원)이다(이하 위 양수금채권을 '제1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19504호로 양수금(채권양도일 2018. 11. 30.)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9. 3. 6.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41,762,575원 및 그 중 29,707,729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9. 3. 27. 확정되었다. 2020.

7. 22. 기준 위 양수금채권의 잔액은 56,345,364원(= 원금 29,707,729원 + 이자 26,637,635원)이다(이하 위 양수금채권을 '제2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5482호로 양수금(채권양도일 2019. 8. 28.)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0. 2. 5.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5,423,819원 및 그 중 3,686,018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6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20. 2. 25. 확정되었다. 2020. 7. 22. 기준 위 양수금채권의 잔액은 5,874,626원(= 원금 3,686,018원 + 이자 2,188,608원)이다(이하 위 양수금채권을 '제3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2017. 8. 4. 13,5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30,5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19.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9. 8. 6,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이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9. 12. 17.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20. 5. 25.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20. 7. 22.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76,957,643원{= 원금 48,106,727원(= 13,066,295원 + 29,273,486원 + 5,766,946원) + 이자 28,850,916원(= 9,512,266원 + 15,165,203원 + 4,173,447원)}이다(이하 위 양수금채권을 '제4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마. E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2017. 2. 20. 29,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17. 4. 20. 12,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22.9%, 연체이자율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이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7. 16.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18. 7. 25.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20. 7. 22.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58,578,663원(= 원금 34,084,367원 + 이자 24,494,296원)이다(이하 위 양수금채권을 '제5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바. 피고들의 어머니인 F는 2017. 1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각 상속지분 1/2)이 있다.

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0. 1. 28. 피고 B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2.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근저당채무액은

29,000,000원이고, 2020.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5,992,800원{= 34,300,000원 + 59,850,000원(= 475,000원 × 252㎡ × 1/2) + 1,842,800원(= 460,700원 × 4㎡)}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G장,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제4, 5양수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135,536,306원(= 76,957,643원 + 58,578,663원) 및 그 중 원금 52,917,608원(=

13,066,295원 + 5,766,946원 + 34,084,367원)에 대하여는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금 29,273,486원에 대하여는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 내지 5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제1 내지 5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가 망인 생전에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약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C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피고 C가 선의라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또, 피고 B가 2020. 2. 18.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C로부터 79,000,000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20. 1. 28.에 있었는바, 피고 C가 그 이후인 2020. 2. 18.에 피고 B에게 79,000,000원을 송금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위 79,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 중 피고 C에게만 채권의 만족을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된 이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0.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95,992,8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금액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및 그 이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근저당채무액은 모두 29,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인 33,496,400원(= 66,992,8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95,992,800원 - 근저당채무액 29,000,000원) × 피고 B의 상속지분 1/2)과 원고가 구하는 2020. 7. 22.까지의 피보전채권액 220,874,510원(= 제1양수금채권 23,118,214원 + 제2양수금채권 56,345,364원 + 제3양수금채권 5,874,626원 + 제4양수금채권 76,957,643원 + 제5양수금채권 58,578,663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3,49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C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3,4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1. 전라남도 무안군 대 252㎡ 중 1/2지분
2. 전라남도 무안군 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내지 2층 각 49.58㎡
3. 전라남도 무안군 호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내지 2층 각 49.58㎡
4. 전라남도 무안군 대 4㎡ 끝.

